

## 전자화폐 관련 법령

조 해 근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속정보망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사회 전반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정보화에 따른 변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양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금융 거래 및 지급결제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인터넷뱅킹, 사이버 트레이딩 등과 전자화폐 등 새로운 결제수단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 및 지급결제 수요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수단들이다.

지급결제 분야의 정보화 중 특히 주목받고 있는 지급결제 수단은 「전자화폐」로서 개인정보 누출, 해킹 등에 대해 다른 지급결제 수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Off-Line의 소액 결제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 각국 등 외국 여러 나라에서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아직 성공적으로 정착된 나라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및 부산 지역에서 교통카드 제도가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소액 거래에서 전자화폐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Off-Line상에서의 활용가능성과 더불어 점차 증가하는 On-Line상의 지급결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자화폐 사업을 시작 또는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전자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나에 대한 기반 구조인 초고속정

보망을 잘 갖추고 있어 해외 각국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전자화폐의 성공적 정착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의 정착을 위해서는 초고속정보망 등의 기술적인 조건과 더불어 사회의 법·제도적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거래의 발전에 따라 전자화폐가 점차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는 매우 미비한 상태로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뿌리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현재 전자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입법 규정은 거의 없으며,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에서 선불카드의 일종으로 전자화폐의 개념을 유추해내고 있다. 그러나, 2001년도에 발생하였던 전자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속칭 「PG(Payment Gateway)업」에 대한 경찰의 여전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령은 전자지급결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향후 전자지급결제 수단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자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는 2001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의 하나로 전자화폐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또한 이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제 그 범위를 정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 II. 전자화폐의 개념 및 종류

### 1. 개념

일반적으로 「전자화폐」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화폐이다. 이때 전자화폐는 '은행 계좌를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대금지불이 가능한 것으로 화폐가치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인 수단이다'<sup>1)</sup>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개념으로는 '화폐가치를 디지털화하여 전자적 장치에 저장하고 이를 지급결제에서 활용하는 결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최초로 법문에 전자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한 법은 2001년 2월 28일 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다. 동법 제38조는 수수료 등의 납부를 전자화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동법은 전자화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전자화폐를 처음으로 개념 정의한 법규는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다. 우리나라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화폐의 개념으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법의 위임을 받아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 및 환급의 대상이 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대한 종류의 하나로써 전자화폐를 언급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서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환금성과 보편성을 주 개념요소로 하여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전자화폐」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제80조 제3항 제1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전자화폐가 '전자적 매체에

의 저장'과 '지급결제 수단'이라는 개념 요소를 중요한 개념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정경제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안)<sup>3)</sup>에서는 전자화폐를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매체에 저장된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개념 요소로 '범용성'<sup>4)</sup>, '보편성'<sup>5)</sup>, '환금성'<sup>6)</sup>, '등가성'<sup>7)</sup>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화폐의 개념과 관련된 해외의 입법례로는 EC에서 규정하고 있는 EC의 회원국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대한 지침"<sup>8)</sup>이 있으며, 동 지침에서는 전자화폐란 "발행인에 대한 청구원으로 표상되는 다음과 같은 금전적 가치로서 전자적 장치에 저장되며, 발행되는 금전적 가치보다 적지 아니한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발행되며, 발행인 이외의 기업에 의하여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2. 종류

전자화폐는 주 활용범위와 디지털화된 가치(전자화폐)의 저장 매체에 따라 스마트카드를 주 저장매체로 활용하고,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Off-Line 지급결제시장에서 빠르게 부각되고 있는 「카드형 전자화폐」와 PC(Personal Computer)

3) 재정경제부에서는 전자거래의 발전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일반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02년 법제정을 목표로 2001년말부터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가칭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입법예고중이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또는 영업장에서 이용될 것

5)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제한이 없을 것

6) 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의 교환이 보장될 것

7)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되어 발행되며, 그 교환된 금액 이상으로 발행되지 않을 것

8) 「전자화폐와 관련하여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대한 EU의 전체적인 규제 방안으로 채택한 전자화폐기관의 수행과 신중한 감독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0/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September 2000 of the taking up, pursuit of and prudential supervision of the business of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의 Article 1 제 3호에는 전자화폐의 개념 요소 규정을 통해 전자화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1) 전자화폐에 대한 정의는 유럽중앙은행(1998), 유럽연합(1998)의 정의를 채택하였다.

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 38조(수수료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벌칙금·벌금·과료 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또는 서버에 디지털화된 가치를 저장하여 주로 On-Line상의 콘텐츠에 대한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 구분되어지고 있으나, 현재는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가 활용 범위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어 그 활용 영역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On-Line상의 콘텐츠 거래에 대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 방식에 따라 「현금대체방식」, 「수표대체방식」, 「신용카드대체방식」, 「계좌대체방식」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서는 전자화폐의 개념 특성상 이용자가 현금을 대체하여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대부분 전자화폐라고 하면 현금대체방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 III. 외국의 전자화폐 관련 법령

전자지급결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UCC 제4A편(Uniform Commercial Code 4A)」와 「전자자금이체법(EFTA: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f 1978)」, UNCITRAL(국제연합국 제거래법위원회)에서 1992년 5월 제25차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간 지급이체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이 있으며, 이 밖에도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등 여러 나라가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독립된 법령으로는 현재 EU에서 「전자화폐와 관련하여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대한 EU의 전체적인 규제 방안으로 채택한 전자화폐기관의 수행과 신중한 감독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0/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September 2000 of the taking up, pursuit of and prudential supervision of the business of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여진다.

동 규정은 총 13개의 Article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8개의 Article이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에 대한 규정이며, 나머지 5개의 Article은 동 규정의 시행, 경과조치, 효력발생 관련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화폐와 관련된 핵심 규정으로는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대하여 은행지침을 적용하며, 환급가능성, 발행기관의 초기 자본 및 자기자금비율, 선불 예치금의 투자 제한 및 주무관청의 감독 규정 등이 있다.

또한, 동 규정은 회원국들이 2002년 4월 27일 까지 동 규정을 따르는데 필요한 법, 시행령과 행정적 규칙이 발효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들을 취한 경우 위원회에 즉시 통지토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 규정이 회원국들에게서 지도록 함으로써 전자화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EC의 전자화폐 관련 Directive의 Article 및 주요 내용〉

- Article 1
  - 동 규정의 적용범위
  - 전자화폐 및 발행기관의 정의
  -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업무 제한
- Article 2
  - Directive 91/308/EEC, Directive 2000/12/EC의 적용 여부
- Article 3
  - 발행된 전자화폐의 환급에 필요한 규정 (환불요건, 최소금액 등)
- Article 4
  - 초기 자기자본 및 자기자금비율
    - 1,000,000 EUR 이상 등 규정
- Article 5
  - 투자의 제한
    - 미결제된 전자화폐 예치금의 금융투자에 대한 제한 및 주무관청의 감독에 대한 규정

- Article 6
  -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 Article 7
  -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경영
    - 건전하고, 신중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감독절차가 필요
- Article 8, 9
  - 동 규정의 적용 배제 범위, 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 Article 10
  - 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회원국의 조치사항
- Article 11, 12, 13
  - 동 규정의 개정 방법, 효력 발생시기 및 동 지침의 승인에 대한 서명국

#### IV. 전자화폐와 관련된 현행 국내 법령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화폐'에 대한 일반법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재정경제부)」에서 전자화폐의 개념을, 「여신전문금융업법(재정경제부)」의 선불카드 규정에서 카드형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에 대한 건전성 유지 수단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규정 등을 두고 있을 뿐이다.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자화폐의 법령상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감면 또는 환급의 대상으로 전자적 지급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액을 들고 있으며,<sup>9)</sup>

9)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전자적 지급결제 수단 중의 하나로 전자화폐에 대한 개념<sup>10)</sup>을 제시하고, 이를 전자화폐라 칭하고 있다.

동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전자화폐에 대한 개념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법이기는 하나, 저장매체와 지급결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전자화폐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화폐의 기본 요소인 환금성, 등가성, 범용성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전자상품권, 쿠폰, 마일리지 등을 포함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의 공제 또는 환급 대상으로 적절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전자화폐의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 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2001년 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법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통합 제정된 법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카드형 전자화폐에 대한 일반법으로 적용된다고 인식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은행권 등 금융기관들은 전자화폐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로 통상 동법의 "선불카드"<sup>11)</sup>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동법상의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여전법 제2조 제8호)"로서 기존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제1호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동법은 선불카드의 상환의무 규정, 발행한도 제한, 공탁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는 일정요건<sup>12)</sup>하에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선불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현금으로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선불카드를 회수하고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여전법 제22조).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여전법 제24조),<sup>13)</sup>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여전법 제25조).<sup>14)</sup>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선불카드 관련 규정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동법상의 선불카드 관련규정들은 카드형태가 아닌 다른 매체에 저장된 전자화폐들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선불카드를 발행할 경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실질적으로 전체 전자화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화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여러 요건을 기술하고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다. 오히려 법과 시행령의 여러 조문을 연결하여야만 개념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해에 혼란을 가져오는 면이 없지 않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sup>15)</sup>수단 중 3개 이상의 사이버몰<sup>16)</sup>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소비자가

이를 이용한 거래대금의 지급에 앞서 구입·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결제수단”<sup>17)</sup>에 관하여 몇 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이러한 요건을 갖춘 특정한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사항 등<sup>18)</sup>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고,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up>19)</sup> 그리고,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sup>20)</sup>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피해보상보험·지급보증계약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은 그 기준으로 다음의 8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다.<sup>21)</sup>

- ① 전자결제수단을 구매한 소비자가 당해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할 것
- 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일 것
- ③ 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sup>22)</sup>이상으로 할 것

17)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18) ①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자본금 규모 및 자기 자본현황 등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 및 계약의 내용(채무지급보증범위 포함)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③ 잔여금의 현금환불과 관련된 사항 ④ 반품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 ⑤ 당해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황 ⑥ 당해 결제수단 사용상 제한 및 주의사항 ⑦ 그 밖에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1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제1항

2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2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22) 금융감독기구설치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14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및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

12)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카드소지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선불카드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선불카드에 기록된 잔액이 권면금액의 10% 미만인 경우

1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7조의 2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14) 매 분기말 현재 선불카드발행총액(상환된 금액 제외)의 3%(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8조)

15) 대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 제외한다.

16) 하나의 회사에서 개설한 사이버몰인 경우를 제외한다.

- ④ 소비자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말 것
- ⑥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 ⑦ 그 밖에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말 것
- ⑧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은행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체결할 것

또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은 이에 추가하여 다음 2가지를 더하고 있다.<sup>23)</sup>

- ①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지체없이 조정할 것<sup>24)</sup>
- ② 보험금은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sup>25)</sup>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sup>26)</sup>

채국예금 또는 우체국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제외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지불보증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24) 다만,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변동이 잦는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의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지체없이 조정할 것  
 25) 전자결제수단이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로부터 다른 소비자에게 권리 이전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권리 이전된 소비자를 말한다.  
 26)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①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소비자에 대한 대금 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해 전자결제수단을 소지한 소비자가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보험사업자·금융기관)는 30일 이상의 채권신고기간을 두어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 ② 채권신고기간 중 접수된 정당한 소비자의 채권신고금액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사업자·금융기관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각 소비자의 정당한 채권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비례 균분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것

## V. 전자금융거래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화폐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가진 법령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 달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화폐와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안)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또는 영업장에서 이용될 것 ②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제한이 없을 것 ③ 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의 교환이 보장될 것 ④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되어 발행되며, 그 교환된 금액이상으로 발행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전자화폐”<sup>27)</sup>로, 그리고 ①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외의 제3자로부터 재

27) 전자금융거래법(안)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 범용성 高 ← 환금성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용성 → 환금성 → 低
전자화폐	소규모	전자상품권 등	
(인가)	(등록 면제)	(규율 대상에서 제외)	

※ 한국금융연구원,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2002. 9. 12, 23면.

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범위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사용될 것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발행자가 미리 대가를 받아 전자적·자기적 방식으로 발행·관리하고, 지급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sup>28)</sup>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동 법안은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에 대하여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보아 민법상 ‘대물변제’로 간주하고, 효력발생시기 이후의 사실로 지급인이 다시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sup>29)</sup> 그리고, 소지자의 요청시 발행자는 추가비용 없이 전자화폐 잔액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의무 부담하도록 하여 환금성을 보장하고 있다. 전자화폐 발행자로 인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만 ‘전자화폐’의 문구를 업체명 또는 상품명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전자화폐’라는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였다.<sup>30)</sup> 이외에 전자금융업자(비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건전성 확보의무 준수, 환금 요청 집중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방지, 전자화폐 발행자(비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건전성 확보(방화벽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화폐는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나,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 화폐는 아니며 사회일반에 통칭되는 용어에 지나지 아니한다. 어떠한 것을 전자화폐로 보아 법제의 틀안에 포섭하는가 하는 것은 범용성을 기준으로 소비자보호와 산업발전이라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입법관여자에 따라 각기 요건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간의 유기성과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을 계기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는 관련 법규의 정비가 따라야 할 것이다.<sup>31)</sup>

## VI. 결 론

전자화폐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특성에 따라 법적 성격,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의 범위 및 강도, 발행기관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현재 재정경제부가 「전자금융거래법」이란 명칭으로 전자금융에 필요한 기본적 규율을 법제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또한 전자화폐를 포함한 전자금융에 대한 개념 정의, 금융감독상의 문제 등에 대해 법

28) 전자금융거래법(안) 제2조 제14호

29) 다만, 지급이전부터 하자 있는 전자화폐를 지급한 경우는 무효이다.

30) e-money, e머니, 사이버캐시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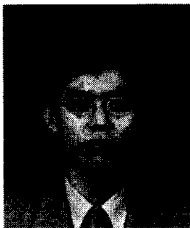
31) 조용혁,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정의 의의와 쟁점”, 2002년 추계 국제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2. 11. 2.

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과 이용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동 법의 내용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전자화폐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조로서 정보통신망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보통신 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자화폐의 정착을 위한 환경요소로서 법·제도적 여건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면서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지급결제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 내지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전자결제 관련당사자간의 권리의무의 명확화를 통한 분쟁의 사전적 예방, 그리고 관련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 저자 소개



曹海根

1994년 2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98년 9월~현재: 정보통신부 근무, <주관심 분야: 정보보호정책, 전자지급결제 등>